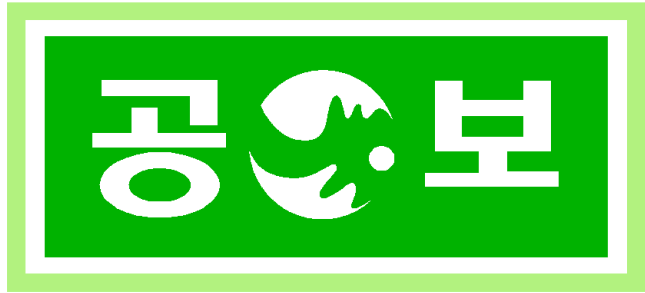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38 호 2013. 9. 2(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1호[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3호[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5호[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6호[도로명주소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7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4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66호[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접수 공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74호[2013년(FY2012) 지방재정공시 공고] 11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41호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지 개발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개발의 모범적 개발 사례 구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북구 산하동 일원, 996,500㎡
4. 시 행 자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장 박형길 (변경없음)
5. 시행기간
 - 기 정 : 2007. 1. 4 ~ 2013. 08. 31
 - 변 경 : 2007. 1. 4 ~ 2014. 08.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녹지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게재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43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KT울산사업지원센터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4-2번지					
점용위치	신명동 282-29	하 천 명	신명천			
점용목적	- 맨홀설치 L=2.9m, B=2m - 부스설치 L=2m, B=1m - 통신관 매설(3PVC) L=4m, B=0.62m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10	3	
점용기간	○ 일 시	착공일로부터 9일간				
	○ 영 구	2013. 8. 23. ~ 2018. 12. 31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 설치 및 굴착	하천공사 목적	통신시설구축공사(광통신부스등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일간			
공사위치	신명동 282-29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신명동	282-29번지	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45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점용위치	산하동 932-3, 282-1	하 천 명	신명천				
점용목적	- 가교 1개소 L=90m, B=8m ○ 일 시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757	-		
점용기간	○ 영 구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 설치	하천공사 목 적	「산하천~신명IC간(중1-90)도로 확장공사(신명교)」 가교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공사위치	산하동 932-3, 282-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산하동	932-3번지	천	470	-	국토교통부
북구	산하동	282-1	천	287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12길 16-1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양명원지구 596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양12길 16-1(연양동)	2013-09-02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06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92-1(매곡동)	2013-09-02	매산초등학교와 월드컵미양 사이 위치하여 위치예측성 확보	2011-08-16	
3	울산광역시 북구 회룡동 1451-5	울산광역시 북구 회룡15길 51-8(회룡동)	2013-09-02	회룡은 회룡의 옛지명이며 산세가 깎잡이 높아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4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855-6	울산광역시 북구 신림1길 9(상안동)	2013-09-02	기쁜 지명인 신림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회룡동 669-6	울산광역시 북구 동생5길 6(회룡동)	2013-09-02	해진부터 회룡을 가로지르는 길 옆에 동생이라 불리어진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원동 470-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863(신원동)	2013-09-02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7	울산광역시 북구 아문동 273-3	울산광역시 북구 상로길 4(아문동)	2013-09-02	기쁜 지명이었던 상로미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관리지명정칭
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49-30, 345-55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13-1(연암동)	2013-09-02	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현재도 두부곡마을이 존재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관리지명추가
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32-1	울산광역시 북구 상명1길 11-1(연암동)	2013-09-02	상명마을 영조때 상명리라 불리 상명마을의 유래가 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1-05	관리지명정칭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4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연암동 1032-11, 381-21, 381-22	상방1길 11-1	상방1길 9	2013. 9. 2.	건물번호 분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사항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울산광역시 복구 새장터1길 5	울산광역시 복구 업포동 190	2013. 9. 2.	건축물대장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 766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 복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원항목 :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126,769원 이하이어야 한다.

-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13년 9월 23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도시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비 서 류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강 동의서 등
------------------	---------------------------------------------------------------------------------------------------------------------------------

- 6.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도시녹지과(☎ 24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774호

2013년(FY2012) 지방재정공시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1년도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고자 『2013년(FY201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황,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물품의 증감현황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통합재정정보

2.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결과
-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특수공시 분야

- 우리구 특수성, 주민수혜도, 사업규모 등 기준
- '12년도 우리구 주요사업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10건)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중산행복샘 건립
-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 명촌어린이도서관 건립
- 울산북구의 책 사업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소방도로 개설	- 양정소공원 조성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 당사해양남시공원 조성

4. 게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행정정보>재정정보>재정공시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052 - 241 - 7113)